2022-10-07 판례 검색은 빅케이스

의정부지방법원 2021. 8. 27. 선고 2021고단62 판결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괸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 란),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의 정 부 지 방 법 원

판 결

사건 2021고단6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괸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 음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 A

검사 고현욱(기소), 강다롱(공판)

변호인 변호사 장소현(국선)

판결선고 2021. 8. 27.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각 3년간 취업제한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 문언, 음향, 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8. 27. 18:29경 불상 장소에서 자신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 B(여, 71세)의 휴대전화로 "C야너내가돈받으러간다 C야내가언젠네 가너한태늙은C야너네가한번니얼굴보러갈께 늙은C야 수일네로갈게죽지말고기다여"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10. 1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과 같이 같은 방법으로 총 9회에 걸쳐 피해자들에게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을 반복적으로 도달하게 하였다.

2022-10-07 판례 검색은 빅케이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누구든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8. 27. 18:56경 불상 장소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 B(여, 71세)에게 "B씨나당신엄마하고몸을- 언었어그래서당신엄마가나한태자 기야한번만해조그레서속초모텔에 가서해!?"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10. 1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총 5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을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 1. 피고인의 법정진술
- 1. C,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 1. 문자메시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44조의7 제1항 제3호(공포심이나 불안감 유발하는 문언 도달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이용음란의 점,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있다.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15년이 되는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2022-10-07 판례 검색은 빅케이스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2년
-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5. 통신매체이용음란 > 통신매체이용음란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0월 [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인 각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죄와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으므로 권고형의 하한만 준수]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금전문제로 앙심을 품고 피해자들에게 반복적으로 공포심이나 불안감,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들이 경찰에 신고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들을 위협하는 등 범행후 정황도 좋지 않다. 피해자들이 심한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고 있고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국가유공자로 건강이 좋지 않은 점 등 유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기는 하나 약 20년 전의 것들인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신정민